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① 성명	박경호 (한자) 朴敬浩		② 생년월일	1941년 3월 26일	
③ 주소	서울시 강서구 영창동 289-1 우성상가 1층 102호				
태료 분내역	④ 부과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행정복지	⑤ 납부통지서번호	00117309	
	⑥ 고지받은 일자	2019. 8. 18	⑦ 과태료금액	500,000	
	⑧ 과태료처분사유	낙시금지 구역내에서 낙시행위			

과태료
처분에
개항
불복사유

저는 지금 가족들과도 몇십년동안 양태없이 혼자서 생활을 해 있는 독거노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윈 직장에서 퇴직을 하신 다윈도 불행하다 보니가 권금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곳이 없어서 생계조차 힘든 상황에 너무 심할것과 우울감이 나기까지 할수 있는것도 없고 그래서 바람이나 싸러 잠시 나갔다가 낙시금지구역 이런걸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노장으로 시력도 좋지않고 금지구역이란 표지를 미처 보지 못하여 벌어진 일이지 제가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곳에서 낙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곳도 제대로된 집이 아닌 삼가 향천 사무실 같은 곳이라 화장실도 주방도 없이 물이나 겨우 누르듯 있는 상황이고 과태료도 지금 수입이 전혀 없이 30만원하는 월세마저 말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능력이 된다면 어찌되었건 제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이나 과태료를 더 납부하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생계조차 너무 힘들어 도저히 30만원이란 큰 돈을 납부할 형편이 못됩니다. 이번 한번만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다시는 규정을 어기지 않고 잘 살리며 살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워 파용으로 선처 부탁드립니다.

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량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3일

1과 2019-12-13 11:33:22